

---

## 요코하마시 넷119 비상연락시스템 이용조건

### 1 이용 안내

요코하마시 소방서 (이하 “소방서”)에 의해 제공되는 넷119 비상연락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전 등록과 더불어 아래 규정을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 2 적용 범위

넷119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3 넷119 시스템의 일반 개요

넷119 시스템은 비상시 도움이 필요하지만 119에 전화하기 어려운 청각 및 언어 장애자를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 4 이용시의 조건

#### (1) 이용자

넷119는 요코하마시내 거주자 및 근무자, 또는 요코하마시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 청각 및 언어 장애자 (장애자 수첩 등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b. 뇌 또는 목(인두)의 부상 및 질환으로 인한 손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 c. 그밖에 도움이 필요할 때 119로 전화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2) 등록

넷119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3) 이용 제한

넷119는, 제삼자가 등록된 이용자로 위장하고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 연결이 안전하지 못한 일부 기기에서 넷119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기기가 보안상 안전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삼자가 이용자의 보고내용을 관람 또는 수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다른 기기의 구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넷119는 긴급연락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4) 필요 기기

---

본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GPS기능을 가진 일부 핸드폰 (피쳐폰), 인터넷 연결, 그리고 이메일 기능이 필요합니다.

(5) 필요 설정

넷119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GPS기능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GPS 설정 변경이 불가능할 때에도 이용자가 긴급히 연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께서는 늘 기능을 켜 놓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6) 이메일 설정

넷119로부터의 이메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이용자의 기기가 도메인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본 시스템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기기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구매처에 문의하시거나 이용자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7) 기기 관리

이용자가 등록한 기기를 제삼자가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8) 인증 에러

인증 에러로 인해 본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으면 “**Contacts (문의)**” 아래에 기재된 문의처 정보를 확인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5 이용자 관련조항

(1) 복수의 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한개의 유저네임으로 복수의 기기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기기 별로 등록해 주십시오.

(2)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록을 위해서 아래의 이용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 a. 성명
- b. 생년월일
- c. 성별
- d. 주소
- e. 이메일 주소

※ 이용하실 수 있는 문자 및 부호는 알파벳, . (마침표), - (볼임표), @ 입니다.

※ 마침표가 연이어서 사용되거나, @앞에 마침표가 오는 (.@) 조합의 이메일 주소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3) 연락이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을 미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초기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기능의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 (4) 긴급할 때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대비하여, 이용자의 비상연락처를 미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초기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기능의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 (5) 소방서에 전화 후 연락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미리 등록하신 비상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연락처에서 비상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십시오.
- (6) 이용자의 비상연락처로 등록하시기 전에 동의를 받아주십시오. 등록 후 소방서에서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하신 비상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7) 소방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병원, 관련 행정부서 또는 경찰서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시외에서 긴급연락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8) 아래의 경우 바로 연락하십시오.
  - a. 자택 주소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등록 정보의 변경
  - b. 넷119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기기의 변경
  - c. 넷119 시스템 이용 종료를 희망하시는 경우
- (9) 넷119 시스템 이용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서 소식 및 보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이용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그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소방서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답장을 받지 못하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0) 각 등록 기기에 발행하는 등록URL은 이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타인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 6 긴급 연락과 관련된 조항

- (1) 긴급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용자 가까이 있는 경우, “Ask someone else to help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119로 긴급전화하여 주십시오.
- (2) 긴급 연락은, 먼저 “Report emergency (긴급 연락)”를 선택하신 후, “fire (화재)” 또는 “medical emergency (의료긴급상황)”을 선택하시고, “home (자택)”, “frequently visited location (자주 가는 장소)”, 또는 “other location (기타 장소)”을 선택하십시오.
- (3) 이용자가 “home (자택)” 또는 “frequently visited location (자주 가는 장소)”를 현재 위치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등록된 주소의 정보가 보내집니다. “other location (기타 장소)”가 선택된 경우, 이용자의 현재 위치의 정보가 GPS를 통해 보내집니다. GPS를 통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송신 전에 지도위에서의 현재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4)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송신되면 소방서에서 이용자의 연락 보고를 접수할 것입니다. 동시에 채팅 도움이 시작되므로, 이용자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5) 이용자가 등록하신 언어만 사용하시고, 채팅 시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6) 이용자의 채팅 연결이 끊기거나 소방서에서 보고를 접수한 후 이용자와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자는 “Request for reply (답장 요청)” 메일을 수신하실 것입니다. 이메일 수신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십시오.
- (7)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Request for reply (답장 요청)” 메일의 수신을 위하여 이용자의 등록 정보를 반드시 변경하십시오.
- (8)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긴급 연락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9) 이용자가 본 절차를 숙지하실 수 있도록 “Practice (연습)”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실제로 소방서와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 보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10) 이용자의 연락 보고가 허위로 판명되면, 이후의 긴급연락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1) 이용자의 언어로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가 등록된 경우,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관계없이 요코하마시 소방서가 이용자의 긴급연락을 접수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자세한 정보를 접수한 후, 이용자의 위치에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여 관련부서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 7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 (1) 넷119은 핸드폰 연결을 사용하므로, 이용자가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터널, 지하 등), 본 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넷119 이용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므로,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측의 공사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본 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3) 이유를 막론하고 넷119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반드시 119로 긴급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 (4) 넷119의 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수신이 가능하게 해 놓으십시오.
- (5) 소방서는 넷119 시스템의 이용 전반 또는 일부에 관하여 사전통보없이 이용을 제한, 중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8 개인 정보의 이용

- (1) 요코하마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넷119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수집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다른 정보와 연결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이하 “개인정보”)는 긴급 보고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만 이용할 것이며,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이용자가 본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서 긴급연락하시면 그 이용자의 보고내용이 관할 소방서로 전달될 것이며,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한 전달될 것입니다.
- (3) 소방서에서는 이용자의 상황과 관련하여 담당 의료기관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4) 넷119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 및 긴급연락 기록은, 기록 저장의 목적으로, 소방서 및 본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 의하여 저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5) 등록 종료 후의 개인정보 및 긴급연락 기록은 일정기간동안 기록 저장의 목적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 (6) 개인정보의 공유, 변경, 해지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이용자의 책임

모든 이용자에게 넷119 이용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 기기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넷119는 소방서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지만, 소방서에서는 이용자가 본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취하는 모든 행위 및 본 시스템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방서의 잘못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10 금지조항

넷119의 모든 이용자에게 상기 규정에 따를 책임이 있으며, 다음 행위에 참가 또는 참가하려는 시도가 금지됩니다. 이용자가 다음 행위에 참가한 것이 판명되면 본 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해지됩니다.

- (1)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온라인상의 행위 포함)
- (2) 다른 이용자, 소방서, 제삼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발생시키는 행위
- (3)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
- (4) 공중 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행위
- (5) 위법행위
- (6) 강요 및 자살유발행위
- (7) 허위 정보의 등록, 업로드, 송신 행위
- (8) 소방서의 적절한 동의없이 넷119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 (9) 소방서에 의한 넷119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10) 넷119의 신용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 (11) 넷119의 이용을 공유하는 행위
- (12) 넷119의 복제, 도용, 변경, 해체, 변환,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및 관련행위
- (13) 소방서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되는 기타 모든 행위

## 11 지적재산권

- 
- (1) 넷119와 관련된 모든 권한 (소유권 및 특허/상표권, 초상권, 인격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권한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소방서 및 법적으로 관련 권한을 받는 제삼자에게 있습니다.
  - (2) 어떤 이용자라도 이용에 있어서 넷119의 권한을 소유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서만 넷119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 어떤 이용자라도 이용에 있어서 넷119 관련 권한 (소유권 및 특허/상표권, 초상권, 인격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권한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4) 이용자가 본 조항이 규정한 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 이용자는 소방서에 어떤 불이익을 끼치는 일 없이 그 위반사항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소방서에 불이익 또는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 이용자는 그 불이익 또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2 면책조항

- (1) 넷119 관련 정보가 이용자 또는 제삼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소방서는 그 침해에 의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넷119는 이용자의 기기 및 상황에 따라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오작동에 의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넷119를 이용자의 기기에 설치할 때 그 기기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서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넷119가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 13 개정 조항

소방서는 본 규정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때 소방서에서는 넷119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그 변경된 규정에 대하여 공유하며, 새 규정은 넷119 시스템을 통해 그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 14 관할 조항

넷119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소방서, 제삼자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요코하마 지방법원의 호도가야 간이재판소의 관할에 의해 다루지게 됩니다.

## 15 준거법 조항

상기 규정은 일본의 법에 준거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소방서 출동부서

전화 045-334-6725 | 팩스 045-334-6720 | 이메일 주소 [sy-shirei@city.yokohama.jp](mailto:sy-shirei@city.yokohama.jp)

---